

한국금융학회·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 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(2022. 2. 9.)

---

#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

---

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
정준혁

# 핀테크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

##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등장

- 금융(Finance) + 기술(Technology) = 핀테크(Fintech)
- 정보통신기술을 금융 산업에 활용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
  - 최근 10여년간 금융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
  - 소비자 편의 증대 / 핀테크 기업의 등장 / 금융 산업 내 경쟁 구도 재편
- 금융회사가 직접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,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여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고,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함

##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배경

-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 – 데이터 처리 기술,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전, 스마트폰의 넓은 보급 등
- 새로운 사업모델 등장 –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한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,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간편송금 등 등장
- 규제적 배경 –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, 오픈뱅킹 등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

#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 환경의 변화

## 데이터 확보와 처리 기술의 중요성

- 금융에서는 본래 정보가 중요 - 가격 결정 기능, 금융거래 진행 여부 등을 결정
-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짐
- 기존의 금융데이터(신용정보) 이외에도 비금융데이터(플랫폼 입점사업자의 상거래 관련 정보 등), 비정형 데이터(social media에 게재한 정보 등) 처리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분석 및 활용
  - 대안신용평가시스템(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) 등장
  - 개인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별 맞춤형 광고, 금융상품 추천 등이 가능해짐

## 금융소비자 접점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급격하게 전환

- 모바일 인터넷 기술 및 IT 보안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급을 통해 금융회사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업무 수행 가능
  - 스마트폰이 금융회사 점포를 대체
  - 맞춤형 광고, 금융상품 추천, IT 기술을 통한 인증, 전자서명 등이 지점 현장 직원을 대체
  -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 가능해짐
-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접점이 지점 중심의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,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채널로 전환

# 디지털 전환이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

## 긍정적 영향

- 소비자 편의성 등 후생 증대
  -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/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의 도입
  - 금융플랫폼의 등장으로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
- 금융 포용 – 서비스의 제공 범위 확대 및 이를 통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 증가
-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소비자의 효과적인 보호
  - 레그테크(Regtech), 섭테크(Suptech) 등 기술 활용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및 감독 효율화
  -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머신 러닝 등 기술을 통해 소비자 성향 파악, 이상 거래 탐지 등

## 잠재적 리스크

- 소비자 보호 불확실
  -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업무 제휴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
- 차별적 취급 우려 –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소외 가능성을 증가시킬 리스크
-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소외 우려 – 지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디지털 소외 계층 발생 우려

#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과제

## 현행 오프라인 중심 법제도의 한계

-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최초 입법예고 된 것은 2011년 –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로 설계
  - 핀테크의 등장,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이뤄지고 간편결제, 송금, 금융플랫폼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
  -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에 한계 존재  
→ 일부 쟁점에 대해 과잉 규제, 과소 보호 논란 발생하고, 해석 상의 어려움 발생
- 전자금융거래법도 2006년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은 있었으나 기본 골격은 그대로임
  -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규제, 간편결제 등 관련 예탁금 보호 법제화 및 강화, 무권한 거래에 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임

## 디지털 금융과 온라인 환경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과제

-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탁판매, 중개, 알선, 주선, 권유, 광고 등의 기준 정립
- 광고나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플랫폼과 제조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책임 소재
- 금융업에 관여하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중심 규제 + 스몰라이센스나 특화된 라이선스를 통한 진입 규제의 조화

---

# 감사합니다

---

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
정준혁